#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630호

2. 발 의 자 : 문상모 의원

3. 발의일자 : 2017. 2. 6.

4. 회부일자 : 2017. 2. 8.

### Ⅱ. 제안이유

○ 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 화하고자 함.

### Ⅲ. 주요내용

1.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함(안 별표).

#### Ⅳ. 참조사항

1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3. 기 타:

##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O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6일 문상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30호로 발의되어 2017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장기로 사용할 경우 감면률 변경에 따른 요금인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운동장의 시설 사용료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 고 장기사용료를 다소 인하함으로써 학교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발의되었 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타·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학교 체육관 사용료를 다소 인하하고,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.
-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육관 사용료 인하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과 학생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는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허가 시간의 제한, 영리행위와 전대행위의 금지 및 사용료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제출되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. 이와 동시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201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사용료 감면분을 보전하기 위해 90억원(서울시 30억원1), 서울시교육청 60억원2))의 예산을
- O 그러나 동 조례 개정과정에서 학교 시설 장기사용시의 감면률이 기존의 70% ~80% 범위에서 60%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단가 조정이 없었던 기존의 운동장 장기사용료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바,

동 조례안은 [별표]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동장 장기사용료 단가를 다소 인하함으로써 기존의 사용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맞추고, 그동안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혼란을 초래해 왔던 '그 밖의 학교시설'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나.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
- 1)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(안 별표)

새롭게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중 운동장을 단기사용 및 장기사용(6개월 이상)으로 구분 하면서, 장기사용의 경우에만 일반 운동장은 기존의 20,000원에서 15,000원으로, 잔디운동장은 기존의 40,000원에서 30,000원으로 각각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먼저 종전의 일반 운동장 사용료는 시간당 20,000원으로,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70%~80%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, 사용자는 시간당 4,000원(80%감면)에서 6,000원(70%감면)의 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.
- O 그러나 최근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장기사용에 따른 감면률이 60%로 변경되어 사용료가 8,000원(60%감면)으로 인상됨에 따라, 결과적으로 기존에 70% 감면률을

<sup>1) 2017</sup>년도 서울특별시 예산-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3,000,000천원(평생교육정책관)

<sup>2) 2017</sup>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-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6,000,000천원(교육재정과)

적용받아왔던 사용자는 33%, 80%를 적용받아왔던 사용자는 사용료가 100%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.

이는 최근의 조례 개정이 그동안 타 시·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동장 장기사용료의 인상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, 결국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.

○ 한편 동 조례안에 따라 학교 운동장 장기사용시의 사용 단가를 5,000원~10,000원 인하하고 여기에 감면률 60%를 적용하면 일반 운동장은 시간당 6,000원, 잔디 운동장은 시간당 12,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종전의 학교 운동장 장기 사용시의 감면률 70%와 동일하며,

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왔던 학교 운동장 장기사용시의 평균 감면률이 71%라는 점에서 종전과 큰 차이가 없고 학교의 재정수익 측면과 사용자의 재정부담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.

#### [표-1] 운동장 장기사용료 현황

(기준 : 2015.3~2016.2, 단위 : 원)

		조례	개정 전	조례 개정 후			
연번	감면률	사용허가 건수	전체건수 대비 비율	평균 사용료	사용료	차액	변동률
1	80%	116	10%	1,250,000	2,500,000	1,250,000	<b>▲</b> 100%
2	75%	33	3%	1,323,000	2,116,000	793,000	▲ 60%
3	72%	2	0.1%	3,364,000	4,805,000	1,441,000	<b>▲</b> 43%
4	71%	6	0.5%	1,262,000	1,740,000	478,000	▲ 38%
5	70%	919	85%	1,458,000	1,944,000	486,000	<b>▲</b> 33%
계		1,076	100%				

#### [표-2] 운동장 장기사용료 비교

(기준 : 1시간, 단위 : 원)

	ユ	분	종전 사용료		현행 사용료			조례안 사용료			
	-1	正	감면전	감면률	감면후	감면전	감면률	감면후	감면전	감면률	감면후
	안동	일 반	20,000	70%	~4,000 ~6,000	20,000	60%	8,000	15,000	60%	6,000
	장	잔 디	40,000	~80%	~8,000 ~12.000	40,000		16,000	30,000		12,000

- 2)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별표)
- O 동 개정조례안은 [별표]의 표 안에 규정되어 있는 '그 밖의 학교시설'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표 외에 별도로 규정하면서,

'그 밖의 학교시설'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소재지 또는

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당초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학교장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나, 동일 지역 동일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학교마다 다르고 그 편차가 심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불만이 지속되었고, 이에 대한 공통적인 사용료 부과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.
- O 그러나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규정」에 따른 학교 설립 기준인 교사(校舍) 및 체육장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조례를 통한 공통적인 사용료 부과 기준 설정이 가능하였으나,
  - 수영장, 농구장, 테니스장 등의 '그 밖의 학교시설'은 학교에 따라 설치 여부가 달라 조례에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장이 주변시세 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여 왔습니다.
- O 현행 조례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'그 밖의 학교시설'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내용이 학교시설 사용료를 정하 고 있는 [별표]의 표 안에 규정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동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률을 적용하여 왔습니다.

따라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'그 밖의 학교시설'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① 감면률을 적용하지 않고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거나, ② 높은 단가를 선정한 후 높은 감면률을 적용하여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, ③ 낮은 단가를 선정한 후 낮은 감면률을 적용하여 주변 시세에 맞추는 방식, ④ 1일 3시간 기준으로 월 정액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, ⑤ 사용자가 없어 별도 사용료기준이 없는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에 따라 종전에 높은 단가를 선정한 후 높은 감면률을 적용해 왔던 학교의 경우 최근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장기사용 감면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를 그 밖의 학 교시설에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.

-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용료 산정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일 특정학교가 운동장, 체육관 등에 적용하고 있는 감면률을 그 밖의 시설에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조례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- 다만 일선학교에서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방식에 있어서 혼란이 초 래되고 있다면 명확한 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인 바, 동 조례안은 이와 같은 규정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.
- O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<sup>3)</sup>,현재 학교장이

<sup>3)</sup>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-3707(2017.02.16.)

체육관, 운동장 등에 적용되는 감면률을 '그 밖의 시설'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'그 밖의 학교시설'의 사용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사용료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## [표-3] 사용료 감면률 현황(테니스장 장기사용)

(기준: 2016년도 장기계약, 단위:건)

감면률	0%	60%	70%	80%	
학교수	7	4	37	5	

#### [표-4] 사용료 현황(테니스장 장기사용)

(기준 : 2016년도 장기계약, 단위 : 학교)

	구분	5,000원 미만	5,000원 이상~ 10,000원 미만	이상~ 10,000원 이상~ 15,000원 이상~ 년 미만 15,000원 미만 20,000원 미만		20,000원 이상~ 25,000원 미만	25,000원 이상
학	감면률 미적용	6	14	13	2	14	4
교 수	감면률 적용	34	15	3	1		

- 3) 경과 조치 규정(부칙 안 제2조)
- 동 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, 동 조례안 시행일과 적용일을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동일 학교의 동일 시설물에 대한 사용요금이 불과 2 달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바,

부칙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시행일을 2016년 12월 29일부터 동 조례 시행 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- O 이는 시설이용자에게 수익을 주는 것으로 신뢰의 이익이 크지 않아법률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로 사료되며4), 서울시교육청에서도 '의견 없음'의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은 운동장 장기사용의 경우 사용료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충분한 설명과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
- □ 이상으로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<sup>4) - 「</sup>소급입법금지 원칙과 그 허용한계」,법제(2001.07)

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,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②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, 그리고 ③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.(헌법재판소 1989. 3. 17. 선고 88 헌마 1결정, 1998. 9. 30. 선고 97 헌바 38 결정)

### 관 계 법 령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7호, 2016.5.29., 타법개정]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 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7호, 2016.5.29., 타법개정]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
- 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
-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 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④ 삭제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、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- 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 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- 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17.1.13.] [대통령령 제27328호, 2016.7.12., 일부개정]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산정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
-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
-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

## 초、중등교육법

[시행 2016.8.4.] [법률 제13943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
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